

보도시점 2026. 10. 7.(수) 09:00 배포 2026. 10. 6.(화) 15:00

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·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개선 등을 위한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거래 투명성 제고
-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, 트레블월렛 등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의 제도화 추진
- 非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보고·모니터링 체계, 감독·검사·제재 등을 정비하여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효과 기대

재정경제부는 ‘26.10.7일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.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 「외국환거래법」 개정(’26.6.2.)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,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.

첫째,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‘가상자산이전업무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·절차,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. 우선, ‘가상자산이전업무’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-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-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.

또한,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·전문인력 요건*을 구체화하고,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.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(한국은행 외환전산망)에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자료는 국세청·관세청·금감원·FIU와 공유·활용할 계획이다.

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, ②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

둘째,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,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등을 종합 개편한다.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,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3개 업종(전자지급결제대행업, 전자화폐업, 선불업)에 더해 현장 수요에 따라 해외결제대금 예치업,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의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6개 업권으로 분류한다. 한편,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(금융감독원)·감독(금융위원회) 업무 위탁 등 검사·감독 체계도 정비한다.

소액해외송금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준용하며,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후 추후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하여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(예: 트레블월렛)를 제도화할 계획이다.

< 해외지급결제업 체계 >

현 행	개 정
1. 환전업 2. 소액해외송금업('17.7월) 3. 기타전문외국환업 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('15.6월) • 전자화폐업('19.5월) • 선불업('19.5월)	1. 환전업 * 무인기기·온라인 포함 2. 해외지급결제업 • 소액해외송금업 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• 전자화폐업 • 선불업 • 결제대금예치업(신설) • 전자고지결제업(신설)

셋째, 환전업의 인적·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, 업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. 환전업의 경우 여타 非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부재하여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*하고, 위반행위 대비 과소한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* '26.上 기준, 실적을 보고한 1,346개 업체 중 581개 업체가 외국환 매입금액 실적 無

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전업의 인적·물적 등록요건*을 신설하고, 보이스피싱, 불법 무역대금,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.

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% (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)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**한다. 이를 통해 환전업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,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* (인적) 임원이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(물적)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
- ** (현행)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업무정지 1·2·3·4개월마다 20%·40%·50%·70% 상한
→ (개선) 업무정지 처분 1·2·3·4개월마다 40%·60%·80%·100% 상한

넷째, 관세청의 **외국환거래** 검사권을 일부 확대한다. 최근 **외환거래가 복잡화됨**에 따라 검사 기관 간 **관할 모호**, **이첩** 등에 따른 **행정비용**, **검사 지연** 등으로 **검사 효율성이 저하되는** 문제가 지적된 바, 관세청의 수출입 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도한 **용역·자본거래 위반사항**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**검사***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
- * (현행) 수출입거래나 이와 관련된 용역·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
→ (개선) 수출입거래 검사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·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도 포함

마지막으로, **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**(15일→30일 이내) 및 **처리 결과 통보 기한**(15일→14일 이내)을 조정하고, **존속 기한을 설정**(10년)하는 등 「외국환거래법」 개정에 따른 **시행령 조문 정비**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.

금번 개정사항은 **입법예고 기간**(‘26.10.7.~’26.10.26.)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**국무조정실 규제심사·법제처 심사** 및 **차관회의·국무회의** 등의 절차를 거쳐 「외국환거래법」 개정안 **시행일**(‘26.12.3.)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.

<재정경제부>	국제 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 백누리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영 (89rlawldud@korea.kr)
			사무관 류성열 (sung126126@korea.kr)
			사무관 장우진 (wj151@korea.kr)
	국제 금융국 외환분석과	책임자	과 장 손선영 (044-215-76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유경 (kyu1019@korea.kr)
<관세청>	조사국 외환조사과	책임자	과 장 허범석 (042-481-79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영작 (yjpark86@korea.kr)

